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272 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4년 11월 25일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정책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,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함

2. 주요내용

- '의무복무 제대군인'의 정의를 신설함 (안 제3조제8호).
- '의무복부 제대군인'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4조)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-|--|
|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 조례에서 "청년"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3조(정의) _____ _____ 뜻은 _____.</p> <p>1. "청년"이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"의무복무 제대군인"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|
|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청년정책 시행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|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용어의 정의)”를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이란”을 ““청년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및”을 “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는”을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서울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3항 중 “수립시”를 “수립 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은 당연직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전단 중 “분과회의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분과회의의”를 각각 “분과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, “간사를 둔다”를 “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“위원회 운영”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각각 “시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”를 “법 제15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을 자격요건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전단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예산범위 내”를 “예산 범위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청년 시설”을 “청년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산평정가격”을 “재산 평정가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19세~39세”를 “19세부터 39세”로 한다.

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----- ----- . ----- -----.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|
|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,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「청년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시는</u>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,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</p> | 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서울특별시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

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·②

(생략)

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.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

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~ 6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

-----.

제6조(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 시의 -----
-----.

제7조의2(청년 실태조사 등) ①·②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수립시 -----.
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

----- "청년정책조정위원회"--.

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

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
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-----
-----.

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(이

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혁신·경제·주택·복지·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·⑧ (생략)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.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당연직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-----
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⑨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

-----.

⑩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
----- 분과위원회-----
----- . 분과위원회의 -----
----- 분과위원회의 -----.

⑪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
----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

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⑥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

장으로 한다.

⑫ 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-----
-----.
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의 -----

-----.

③ ----- 시의 -----
----- 법 제15조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 ·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시 자문 회의 등을 구성 · 운영할 수 있으며,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의2(청년인재정보의 수집 · 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 · 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의3(청년인재추천위원회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(이하 “청년인재추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범위 -----
----- . -----

----- 범위 -----

----- .

⑦ ----- 각호 ----- 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청년인재정보의 수집 ·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의 -----
----- 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청년인재추천위원회) ① ----- 시의 -----

-----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---- 사람 -----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범위 -----

-----.

④ -----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 -----
-----.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
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청년의 건강증진)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

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

-----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범위-----

-----.

제16조(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범위-----
-----.

제18조(청년의 건강증진) ① -----

----- 범위-----

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·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 지원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자치구에서 ‘서울 청년센터’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
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-----.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예산 범위-----

-----.

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
----- 청년시설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재산 평정가격-----
-----.

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~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
2. (생략)

<신설>

제24조 (생략)

④ -----
-----.

1. ----- 19세부터 39세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25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